

分斷國 統一問題

張 錫 澂 (統一研修院 教授・行博)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1. 서 론	3
2. 독일의 통일문제	6
가. 동서독의 분단과정	6
나. 동서독의 접근과정	9
다. 동서독의 교류현황	31
3. 중국의 통일문제	47
가. 중국·대만의 분단과정	47
나.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51
다. 중국·대만의 교류현황	66
4. 베트남의 통일문제	72
가. 월남·월맹의 분단과정	72
나. 월맹의 적화통일 전략	73
다. 베트남 적화통일의 교훈	79
5. 결 론 (통일전망)	84

1. 서 론

우리는 지금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最高價値와 至上課題가 있다면 그것은 두 말할 나위없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 실현일 것이다.

인류역사상 분단국가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왔다.

한국과 독일처럼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강제분단된 「국제형 분단국」이 있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그 나라의 내부혁명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분단된 「국내형 분단국」이 있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 라오스와 캄보디아, 몽고,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남북에멘등과 같은 분단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법이론상 「分斷國家(Divided Nations)」라기 보다 「分裂國家(Partitioned Countries)」로 구분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열국가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강하며 과거의 統合도 본질상 합의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外的 統合을 가져온 強制的 要素가 해소되면 宿命적으로 분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독일, 중국과 베트남이 分斷國家로 분류된다면, 기타의 국가들은 分裂國家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우리는 제 6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분단이후 일찌기 보기 어려웠던 統一論議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기존 통일방안의 基調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民族共同體」의 시각에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 통일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民族共同體 意識을 바탕으로 둔 민족내부의 통일여건조성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른 統一環境 造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통일을 가능케 하는 내외의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다른 분단국가들이 통일여건의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孔子는 일찌기 제자들에게 설파하기를 “3人行하면 必有我師”라 하였다. 즉,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느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안고 통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길을 떠

난 나그네라면 독일이나 중국, 베트남은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갖는 比較對象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民族共榮의 길로 2人 3脚競走처럼 상부상조하면서 동독의 개혁과 더불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논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서독은 우리가 따라 배울 스승이 될 것이고, 오랜 전쟁의 同族相殘의 참극 끝에 1975년 4월 30일 赤化統一로 멸망해 버린 월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左傾共産勢力의 척결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는 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분단국들의 통일문제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공을 위해 他山之石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서술의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필요성에 유의하여 本稿에서는 분단과정,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최근의 교류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월남의 패망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2. 독일의 통일문제

가. 동서독의 분단과정

(1) 동서독의 분단

1945년 2월 12일 미국·영국·소련은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전후 독일에 대한 점령·관리 및 배상문제에 관한 비밀협정을 맺었다.

그 후, 동년 5월 8일 마침내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자 연합국은 6월 5일 「4大國 共同宣言」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독일을 분할 관리하기로 확정하였다.

- ① 「알타협정」에 따른 독일의 주권을 연합국이 장악한다.
- ② 「연합국 독일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미·영·불·소 4국이 독일의 영토를 분할 점령하고 베를린을 연합국 공동관리하에 둔다.

그리고 동년 8월에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전후 독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포츠담宣言」을 발표했다.

- ① 평화조약을 기초하기 위하여 「3국 외상회의」를 구성한다.
- ② 독일의 4개 점령지역에서 통일적인 관리·조직을 수립하여 무장해제를 실시하고 非軍事化한다.

- ③ 독일에 관련된 주요결정은 전체로서 공동결정한다.
- ④ 독일의 경계는 單一取扱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오데르·나이세線」以東地域은 폴란드의 행정관리하에 두고, 동프로이센 북반부는 소련, 남반부는 폴란드의 행정관리하에 둔다.

이와같은 국경협정은 잠정협정으로서 「對獨講和會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국경선으로 굳혀가게 되었다.

「오데르·나이세線」의 국경선 설정은 舊 폴란드의 동부영토를 병합한 바 있는 소련이 독일을 희생시키고 폴란드에 代償을 부여하기 위하여 「알타협정」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포츠담宣言」에서 이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패전국 독일은 「오데르·나이세線」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경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크게 변경되었고, 전쟁이전의 국토를 4분의 1정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분단은 「알타협정」에서 합의하였고, 「포츠담선언」에서 확정되었으며, 잠정적인 조치로서 전후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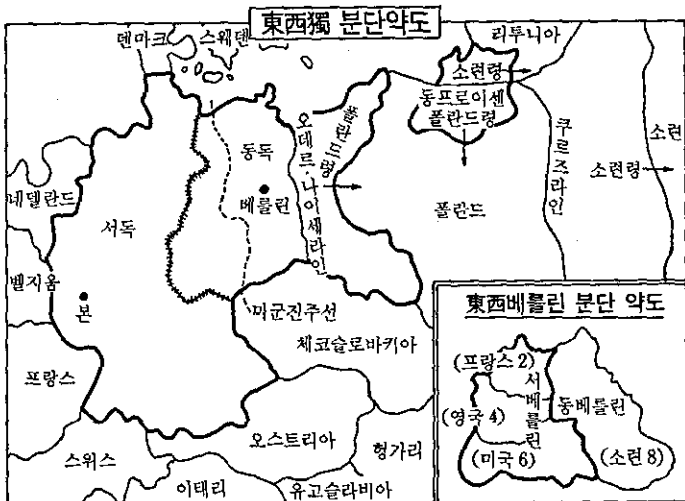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서방진영과 소련은 패전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과정에서 점차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견해차이를 보여 왔으며, 중국에는 대립상태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사실상 동결되고 고정화되어 갔다.

1947년 3월 모스크바, 동년 5월 런던에서 두 차례 「4국 외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1948년 2월 23일 미·영·불 3국은 점령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에 합의하여 「3個國統合」을 이룩함으로써 오늘의 西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은 「3개국통합」에 반발하고 1948년 3월 30일 「獨逸占領共同管理理事會」로 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오늘의 東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 독일은 국토의 4분의 1과 동프로이센을 잃고 東西獨逸로 분단되고 베를린도 분단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동서독 분단약도 참조).

나. 동서독의 접근과정

(1) 연합국 공동관리기(1945~49)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여 독일정부가 해체되고 4년간 연합국 군정이 실시된 시기이다.

독일은 無政府狀態로 방치되었고, 국토는 분할통치 되었다. 이 시기는 서방측과 소련의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의견차이가 심화되어 「오데르·나이세線」 國境問題를 비롯하여 분단이 고착화 되면서 避難民問題 등, 혼란이 야기되던 시기로서 「統一政策의 空白期」였다.

(2) 동서독의 정권형성기(1949~55)

두 개의 독일정권이 형성된 시기이다. 1949년 9월 7일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서독에서 수립되고, 1949년 10월 7일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동독에서 수립되었다.

동서독의 憲法上 特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독의 基本法¹⁾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의 聯邦國家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② 입법·행정·사법은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相互의 통제와 균형의 체제가 보장된다.

특히 前文에 “독일민족은 하나다”라는 구절을 명기해 놓고 있다.

나) 동독의 憲法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민족의 社會主義國家이다.

② 모든 정치적 권력은 勞動者에 의해 행사된다.

③ 독일민주공화국은 영구히 소련에 連繫되며 社會主義 國際 社會의 일부를 구성한다.

특히 前文에 “독일민족은 하나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라고 명기해 놓았었다.²⁾

서독의 初代首相 아데나워는 서방측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바탕

1) 서독은 헌법을 헌법이라 하지 않고, 통일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基本法(Grundgesetz)」이라고 부르고 있다.

2) 동독은 헌법 前文의 “독일민족은 하나다”라는 文句를, 1974년 憲法改正時 삭제해 버렸다.

으로 한 「힘의 政治」를 표방하여 自由民主體制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자유 속에서의 통일실현”을 주장하는 統一政策을 내세웠다.

그 통일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과 소련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信念的 原則」
- ② 「힘의 균형」을 서방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소련이 이에 굴복하게 해야 한다는 힘에 의한 「政策的 原則」

아데나워는 “동독은 合法政府가 아니며 다만 「蘇聯占領地域」이므로 서독만이 全獨逸을 대표하는 唯一合法政府”라고 선언했다.³⁾

그리고 그는 “서독이 공산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또 연합국과의 관계에서 後見國家의 지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구 내지 대서양을 묶는 다양한 統合機構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 대결교착기(1955~66)

1955년 아데나워는 소련을 방문하고 서독과 소련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서독과 소련은 대사를 상

3)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은 “서독만이 全獨逸의 主權을 대표하며, 國際的 發言權을 갖는 正統성을 지닌 唯一合法政府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호간 파견하게 되었다.

한편, 동독은 소련의 시주에 따라 통일정책으로 이른바 「中立化方案」을 제의했다. 소련의 속셈은 서독이 서방측의 통합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차라리 독일을 中立地帶로 묶어두어야 하겠다는 저의에서 동독을 부추켜 「중립화방안」을 제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중립화방안」을 거부하였으며, 1955년 5월 5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가입했다. 그리고 「歐洲會議(Europarat)」,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歐洲經濟共同體(EEC)」에 연달아 가입함으로써 서방측의 다양한 통합기구의 主軸國家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련은 「중립화방안」이 서독의 거부로 실패하자 1955년 5월 14일 동독을 재빨리 「바르샤바條約機構(WTO)」에 가입시키고 동구 공산권의 경제협력기구인 「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에 가입시킴으로써 동서진영의 分極化 과정에 발맞춰 “동서독의 대결”은 “동서진영의 대결”로 外延이 확대되어 상호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편, 서독은 동년 12월 9일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의 외교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의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⁴⁾

을 발표하여 동독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데나워는 “국제감시하에 全獨逸自由總選舉를 실시하여 통일을 실현하자”고 제의했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소련점령 지역에서의 民權回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독은 이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동서독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의를 함으로써 다분히 선전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별다른 대안의 제시도 없었다.

1956년 12월 9일 동독의 울부리히트는 다시 「國家聯合案(Confederation)」⁴⁾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공통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되고, 공동기구에 의하여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聯合形態의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정치적 명분에 따라 제의한 것으로서 실제로 성사되지 못 할 경우를 예상하면서도 상투적인 공산국가들의 協商

-
- 4) Hallstein Doctrine 이란, 빌헬름 그레베 대사가 창안하였고, 1955. 12. 9. 서독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발표한 정책이다. 일종의 「국제법적 보복조치」의 성격을 띤 정책이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 5) 1956. 12. 9. 東獨 울부리히트의 「國家聯合案(Confederation)」은, 1960. 8. 15. 金日成의 「高麗聯邦制」와 비슷한 내용으로 共產國家들의 赤化統一을 위한 상투적인 戰略임을 간과할 수 없다.

戰略을 援用해서 적화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기만적인 제의였다. 왜냐하면,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國家 聯合을 이룩한 예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1961년에 동독은 갑자기 「베를린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동서독의 관계는 전후 최악의 상태로 대치하게 되었다.

1963년 서독은 에르하르트수상이 집권하였다. 그는 친미노선을 견지하면서 동독과는 대결상태로 대처해 나갔다.

동독은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對蘇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서독에 비해 크게 열세한 위치에서 국가로서의 국제법상 승인을 겨냥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1966년 서독의 키징거수상이 등장하면서 「大聯政時代」⁶⁾의 막을 올렸다. 키징거는 동독에게 「武力不行使宣言」을 하고, “군사·안보문제와 통일문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은 全獨逸代表權의 주장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兩當局最高責任者協商」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4) 평화공존질서모색기(1966~72)

1967년 1월 31일 서독은 루마니아와 그리고 1968년 유고슬라

6) 키징거의 大聯政時代란, 基民黨(CDU)과 社民黨(SPD), 즉 키징거와 브란트의 聯政을 말한다.

비아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1969년 브란트수상이 집권하면서 社民黨과 自民黨의 聯立政府를 출범시켰다.

새 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대외정책에 관한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적 차원에서 동독과 협상한다.

② 양독관계는 특수관계이며 상호 외국이 아니다. 두 개의 독일은 인정하나 국제법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인정치 않으며 양독 관계는 內獨關係이다.

③ 서독은 동독을 포함하여 동구제국과 어떠한 무력행사도 거부한다.

④ 서독은 4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베를린의 지위가 신장되기를 원한다.

⑤ 동독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⑥ 「全獨省」을 「內獨省」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全獨逸代表」라는 공식용어를 사용치 않을 것이다.

서독은 “「독일민족은 하나」라는 이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두 개의 독일」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할슈타인 원칙」을 과감히 폐기하여 동독을 사실상 승인하고, 현재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하며, 동독

및 동구제국과도 선린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했다.

브란트는 “서독정부는 새로이 동독에 교섭을 제의하며 동독의 존재를 독일영토내의 다른 국가로 인정하며, 동등한 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즉 “독일문제의 해결없이 구주의 긴장완화 없고, 구주의 평화유지 없이 동서독 긴장완화 없다”는 현실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가) 동방정책(Ostpolitik)

브란트는 집권이후 슈미트를 단장으로 하는 對蘇使節團을 소련에 파견하여 향후 추진하려는 東方政策에 대한 소련의 意中을 확인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8일 東方政策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독일내 2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이 아니며 다만 국내법상의 승인이다.
- ② 양국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特殊關係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하여 不可侵條約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 ③ 독일에 대한 4대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존중한다.
- ④ 核擴散禁止條約에 서명할 예정이다.
- ⑤ 양독간의 경제·문화부문에 상호 협력할 것이다.

⑥ 폴란드와 소련에게 무력사용 포기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⑦ 「할슈타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⑧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線」에 관한 國境協商을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발표한 東方政策은 독일이 당면한 현실문제를 적시하고 “緊張狀態로 부터 平和定着의 路”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브란트는 독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변화, 구주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와 독일민족의 통일외지에 따라 통일정책을 구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적시하고 우선 동서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공동번영과 민족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일민족의 共同體意識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정책(Deutschland Politik)을 수립하였다.

나) 정상회담

1) 제1차 정상회담

1970년 3월 19일 브란트는 서독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동독을 방문하여 슈토프 동독수상과 에르프르트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서독의 제의내용〉

① 동서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일민족은 單一

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 양독관계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모든 차별철폐,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경선을 존중한다.

③ 조약쌍방 영역의 사회구조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④ 상호간 선린적 협력, 특히 전문적·기술적 협력의 도모, 이를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⑤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기존 4대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한다.

⑥ 베를린의 지위개선을 위한 4대강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동독의 제안내용>

① 동서독간 호혜평등의 관계정상화, 서독의 唯一代表權 포기.

② 대내외 정책에 대한 불간섭,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

③ 동서독간의 무력행사 포기, 상호승인, 영토보전, 현국경선의 존중.

④ 동서독의 UN가입 신청.

⑤ 핵무기 사용금지, 화학·세균무기의 제조·사용·저장금지, 군사비 50% 감축.

⑥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 처리문제 협의.

⑦ 동독에 대한 서독의 부채청산 협의.

이와같은 제안들이 양독 수상에 의해 발표되었을 뿐, 아무런

합의 없이 기대가 촉망되었던 제1차 정상회담은 끝났다.

그러나 동서독 정상회담은 수년동안 동결되었던 독일문제가 다시 국제무대에 부상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2) 제2차 정상회담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다.

〈서독의 제의내용(카셀 20개항)〉

- ① 민족의 장래와 결합 및 평화이익을 위한 조약체결.
- ② 조약은 양독 국회의 비준 요망.
- ③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적용.
- ④ 폭력의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⑤ 상호독립과 자주성 존중.
- ⑥ 일방이 타방의 대표권 행사 및 대항금지.
- ⑦ 독일내 전쟁재발의 방지.
- ⑧ 평화공존 방해행위의 근절.
- ⑨ 군축노력의 지지.
- ⑩ 조약의 효력 발생시기 제시.
- ⑪ 4대강국의 협정을 존중.
- ⑫ 4대강국의 권리·의무를 존중.
- ⑬ 자주권의 인정.

- ⑭ 상호간 여행·왕래의 확대.
- ⑮ 이산가족의 문제해결.
- ⑯ 공동경제지역의 선린관계 유지.
- ⑰ 제반 교류의 협상개시.
- ⑱ 교역에 관한 기존협정 유효.
- ⑲ 장관급 「상주대표부」 전권대표 임명.
- ⑳ 조약 합의 후 국제기구에 동시가입.

한편 동독의 슈토프는 제 1 차 정상회담에서 제의했던 내용을 다시 내 놓았다. 그는 특히 동독의 국제적 지위에서의 주권과 同等權에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

동독의 입장은 아직 정상회담 이하의 실무급 협상에 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형편이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회담의 종료를 서둘렀다.

그러나 서독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한 관계장관 및 실무자들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끈질기게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다) 독·소 불가침조약

서독과 소련은 상호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에 고려하여 197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독의 바르 외무차관과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간에 「상호무력행사 포기의 원칙」에 관한 문제 및

「국경선 준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1970년 7월 16일 동독의 울브리히트는 “서독과 소련의 不可侵條約이 체결되면 중단된 양독대화를 재개하겠다” 고 밝혔다.

결국 1970년 8월 12일 「獨·蘇不可侵條約」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그 全文 5個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주의 평화유지.
-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③ 무력행사의 포기.
- ④ 「오데르·나이세線」을 포함한 현재의 국경선 존중.
- ⑤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의지 존중.

이 조약의 체결로써 독일의 영구분단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독의 쉘 외상은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에게 전달한 「독일민족을 위한 書翰」에서 “이 조약이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自決에 바탕을 두고 그의 통일을 다시 회복하고 구주의 평화를 유지하는 서독의 정치적 목적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힘으로써 民族自決에 의한 독일의 재통일 가능성을 재확인시켰고, 이에 소련도 수락하게 되었다.

라) 獨·波友好條約

서독과 폴란드는 여러차례의 예비회담 끝에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獨·波友好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간의 국교수립에 관한 일반사항을 골자로 하고, 그 밖의 내용은 「獨·蘇不可侵條約」과 유사하다.

① 폴란드와 서독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존중하고, 각기 영토권 존중.

② 무력사용의 포기.

③ 경제·과학·기술·문화관계의 정상화.

결국 이 두 조약의 체결로서 그동안 서독의 대동구권 외교 및 동독과의 基本條約 협정에 대한 소련의 거부요인이 제거되었고, 「베를린協定」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브란트는 동독과의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동독의 맹방들을 서독에 끌어들임으로써 종국적으로 동독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우회적인 외교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5) 교류협력기(1972~현재)

가) 4대강국 베를린협정

1972년 6월 3일 4대강국은 「베를린協定」을 체결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독과 서베를린간 자유통행 보장.

② 서독과 서베를린의 연결유지, 서베를린은 서독영토의 일부가 아니며, 서독에 의하여 통치되지 않음.

③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방문 인정.

④ 서독은 소련과 동구지역을 여행하는 서베를린 시민의 영사 보호국이 되며, 국제적으로 서독의 서베를린 대표권 인정.

⑤ 서베를린에 소련영사관 설치.

⑥ 서독의 법률은 서베를린에 적용되지만 서독의 연방의회는 서베를린에서 회합을 가질 수 없음.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그동안 동서독간의 난제들이 제거되었다. 결국 이 협정은 동서독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 서독의 바르 외무차관과 동독의 볼 외무차관에 의해서 동베를린에서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⁷⁾ 이 조약의 10개항 全文은 다음과 같다.

① 兩國은 同等資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정상적 善隣關係를 발전시킨다.

② 양국은 UN 憲章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영토보전의 존중, 자결권, 인권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7) 「東西獨 基本條約」締結이 있기까지는 頂上會談 2回, 長次官會談 70回, 실국장급회담 200回, 모두 2년간 무려 272회의 會談끝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③ UN憲章에 따라 양국은 그들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武力에 의한 위협이나 그 사용을 止揚한다. 그들은 현재나 장래에도 그들의 현존 경계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영토보전을 무조건 존중할 책임을 진다.

④ 양국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다른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⑤ 양국은 歐洲諸國間의 평화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歐洲에서의 安全과 協力을 위해 기여한다. 쌍방은 歐洲內에서 무력과 군비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이로 인하여 참가국의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쌍방은 歐洲內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제적 감시하에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목표로 하여,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학살무기 분야에 있어서의 군비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을 支持한다.

⑥ 양국의 통치권이 각자의 영토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쌍방은 양국의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상호獨立性和自主성을 존중한다.

⑦ 양국은 關係正常化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人道的 문제를 규제할 용의가 있음을 宣言한다. 쌍방은 本條約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사범, 우편, 통신업무, 보건, 문화, 체육, 환경보호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協定을 체결할 것이다.

⑧ 양국은 常駐代表部를 서로 교환한다. 대표부는 쌍방의 政府 소재지에 각기 설치한다.

⑨ 양국은 本 조약 이전에 쌍방이 체결한 모든 雙務的, 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⑩ 본 조약은 批准을 요하며, 비준에 관한 覺書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양국의 全權代表는 본 조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안으로는 독일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정치적 명분을 찾고, 동서독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구주평화와 동서진영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약은 “暫定協定の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즉, 경계선의 불가침과 같은 특정한 원칙을 포함시켰으나, 그 내용은 內獨關係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원칙」 내지는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서독 체제간의 적대관계를 극복한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적대적 협력관계를 규정한 조약으로 오히려 체제간의 적대관계를 논리적 바탕으로 하여 다만 “서로를 위하여 선택된 분야

에서의 협력을 추구하자”는 「좋은 이웃관계」의 형식을 겨냥한 소극적인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⁸⁾

이 조약에 의해 서독이 처음으로 동독을 승인했다. 물론 「국제법적 승인」은 아니고 「국내법적 승인」이었으나 「1民族 1國家」라는 특수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은 이 조약을 分斷條約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資本主義民族」과 「社會主義民族」이라는 각기 상이한 두 민족이 생겼고, 이들은 서로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2民族 2國家」임을 밝혔다.⁹⁾

이에 반하여 서독은 이 조약을 통일로 가는 과도적 暫定協定으로 해석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닌 分斷苦痛을 완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즉, 중단기적 전망으로는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자유왕래 및 공동번영의 장을 열고, 장기적 전망으로는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自決領域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다) UN 동시가입

1972년 11월 5일 4대강국은 “동서독의 UN 동시가입을 지지한

8) 안병영, 「동서독관계와 구주 국제관계」, 연세대, 1982, p.168.

9) 1971년 에리히·호네커가 동독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2民族 2國家」임을 특히 강조했다.

다”는 「4개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8일 동서독은 「UN 가입신청에 관한 議定書」를 마련하고 共同聲明을 통하여 “양국가는 UN 가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1973년 9월 18일 제 28 차 UN총회에서 「東西獨同時加入案」이 가결되었고, 그 후, 1975년 「歐洲安保協力會議」에서 정식으로 調印됨으로써 최종적인 매듭을 지었다.

라) 제반협정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여러 분야에 걸쳐 제반협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주요협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여행 및 구역간 교류협정(1971. 12. 20)
- ② 一般通行協定(1972. 5. 8)
- ③ 자동전화의 개통 및 증설에 관한 협정(1972. 7. 24)
- ④ 경계지역 河川정비와 확장에 관한 협정(1973. 9. 20)
- ⑤ 旅行者의 무료 입원가료에 관한 보건협정(1974. 4. 25)
- ⑥ 부양료 支拂移轉에 관한 협정(1974. 4. 25)
- ⑦ 뤼베크灣 부근 영해 및 漁業협정(1974. 6. 29)
- ⑧ 쓰레기·下水流入에 따른 보상협정(1974. 12. 10)
- ⑨ Swing 借款 규칙의 연장에 관한 협정(1974. 12. 12)
- ⑩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1976. 3. 30)

- ⑪ 에거담地域 送水管 설치에 관한 협정(1978. 5. 3)
- ⑫ 북부高速道路(베를린→함부르크) 건설 및 왕래에 관한 협정(1978. 11. 16)
- ⑬ 홍수방지용 貯水池 설치·운영에 관한 협정(1978. 11. 29)
- ⑭ 獸醫師 협력에 관한 협정(1979. 12. 21)
- ⑮ 鐵道複線(베를린→헬름슈테르) 건설 및 운하(미테레랜드→카날), 高速道路(마르타→헤레스하우젠) 건설에 관한 협정(1980. 4. 30)
- ⑯ 東西獨 이주협정(1981. 4. 25)
- ⑰ 靑少年 교류협정(1982. 6. 18)
- ⑱ 서베를린地域 電鐵경영권 이전협정(1982. 6. 18)
- ⑲ 文化협정(1986. 5. 8)
- ⑳ 環境保護에 관한 협정(1987. 9. 8)
- ㉑ 放射能 分野의 정보 및 경험교환에 관한 협정(1987. 9. 8)
- ㉒ 科學技術 협력에 관한 협정(1987. 9. 8)

이 밖에도 15개 정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의 체결과 제반협정의 순조로운 체결로써 「대결의 시대로 부터 교류협력의 시대」로 大轉換을 이룩하여 “分斷은 있으나 苦痛은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동서독은 가능한 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협력을 증대시켰

고,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사회개방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통일된 상태를 방불하리 만큼 民族共同體 意識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民族 共同繁榮의 길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동서독은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교류협력으로 共同實利를 추구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가 독일의 통일여건에 유리하게 조성될 때를 기다려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 서독 콜首相 「3段階 10個項」 統一方案 제시

서독의 콜首相은 1989년 11월 28일 동서독의 통일을 위한 國家聯合방식의 「3段階 10個項」의 統一方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3段階〉

제1단계 : 동독에서 自由選舉 실시.

제2단계 : 동서독간에 경제, 환경, 기타문제 협력을 위한 「共同委員會」의 설치.

제3단계 : 「國家聯合」의 형성.

〈10개항의 統一方案〉

- ① 의료 및 재정부문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
- ② 통신망 확충 및 고속전철부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

③ 동독 공산당은 정치범 석방 및 市場經濟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

④ 최근 모드로프首相의 「共同同伴者」 제의를 수락.

⑤ 聯合機構를 형성, 이를 발판으로 議會共同體를 포함하는 동서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치문제 등 논의.

⑥ 통일문제는 歐洲統合 및 東西關係의 개선과 연계시켜 실현.

⑦ 구주공동체(EC)는 동독을 포함한 東歐國家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동독과 「무역협력협정」을 체결.

⑧ 歐洲安保協力會議(CSCE)를 환경보존 또는 「동서무역협력 촉진기구」 등으로 성격을 전환.

⑨ 군비축소에 박차를 가할 것.

⑩ 동독 및 歐洲安定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이와같은 콜首相의 통일방안은 시기적으로 베를린장벽 개방과 동서독 정상회담('89. 12. 19) 등을 계기로 주변의 강대국에게 공식적으로 통일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의 모드로프수상은 「계약공동체」를 주장, 동서독간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속화하되 정치적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서독측의 「獨逸國家聯合」을 통한 「獨逸聯邦」 완성이나 동독측의 「계약공동체」나 모두 統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양측관계

의 진전과 더불어 양쪽이 통독의 충족여건을 확대해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향후 주변국들의 거부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주목해 보아야 하겠다.

다. 동서독의 교류현황

(1) 인적교류

동서독은 분단직후 부터 4大國命令(1946. 10. 29. 명령 제 56 호)에 따라 교통왕래가 이루어져 왔다.

동독은 1964년 9월 연금생활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의 서독방문을 허용하였다.

더구나 1972년 5월 8일 「一般通行協定」이 체결되어 인적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7년에는 1천만명, 1988년에는 약 5백만명이 동서독을 방문했다. 특히 1989년에는 최근까지 동독주민 약 20만명이 넘게 서독으로 대거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베를린 장벽 개방에 따라 인적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서독주민의 동독방문

동독은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을 허용하고 연간 60일간 체류를 허락했다.

서독은 동독의 초청을 받은 상공인, 문화인, 체육인, 종교인들의

동독방문을 허용했다.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미리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방문할 수 있고, 가족과 친지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VISA) 발급시 5마르크(DM)의 수수료와 방문지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하고, 동독체재일수에 따라 1일당 25마르크씩 계산하여 동독화폐로 강제환금¹⁰⁾을 해야한다.

1981년 4월 25일 「移住協定」에 따라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3년에 처음으로 동독주민 8천명이 서독으로 이주 해 왔고, 최근에는 연간 약 3만명이 이주해 왔다.

서독은 동독에게 이주자의 「교육비 반환」¹¹⁾ 및 「Swing 借款」¹²⁾을 해마다 제공 해 왔다.

-
- 10) 「強制換金」이란, 동서독의 화폐가 같지 않으므로(1:4의 환률) 서독 화폐를 동독화폐로 강제적으로 환금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에 관계 없이 1:1로 환전한다. 서독주민이 동독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동독화폐의 잔금은 다시 교환해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독은 동독 방문자의 동독화폐를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도 교환해 주고 있다.
- 11) 「教育費返還」이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의 학력에 따라 동독에서 이수한 교육비를 현재 서독의 교육비로 환산하여 동독에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89년의 20만여명에 달하는 서독 이주자에 대한 「교육비 반환」은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다.
- 12) 「Swing 借款」이란,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를 연기해 주는 차관으로서 「無利子 無償還借款」을 말한다. 서독은 7년을 1기로 삼고 10억 DM의 Swing 借款을 제공해 왔다.

나)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에도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독은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시 강제환금이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시 회한으로 100마르크의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방문기간도 연간 60일로 연장했으나 사실상 訪問日數는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가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哀慶事에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동독의 베를린장벽 개방

1989년 10월 18일 동독의 호네커당서기장(국가평의회 의장 겸 임)이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주민의 저항에 의하여 퇴진하고, 크렌츠당서기장(국가평의회 부의장)이 등장하여 改革政策을 추진하였으나, 그마저 短命으로 끝나고, 다시 모르도프가 등장하게 되었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 및 국경선개방」을 선언, 동독주민 약 5백만명이 서베를린 및 서독으로 관광나왔다가 되돌아가는 진기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부란덴부르크문에서 삼페인을 터뜨리면서 통일을 방불하리만큼 「역사적인 밤」을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분단 45년만에, 베를린장벽의 설치 29년만에 완

전한 국경개방이 처음으로 실현된 쾌거였다.

또한 東西獨 統一問題는 뒤이어 개최된 歐洲頂上會談에서 원칙적인 찬성을 이끌어 낼 정도로 구주의 懸案問題로 국제문제화하

〈表 1〉 서독인의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

(단위 : 천명)

연 도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	서독인의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의 당일여행
1970	약 1,254	약 1,400
1971	약 1,267	약 1,400
1972	약 1,540	약 1,400
1973	약 2,279	약 1,400
1974	약 1,919	약 1,400
1975	약 3,124	약 1,400
1976	약 3,121	약 1,400
1977	약 2,988	약 1,400
1978	약 3,177	약 1,400
1979	약 2,923	약 1,400
1980	약 2,746	약 1,400
1981	약 2,088	약 1,120
1982	약 2,218	약 1,120
1983	약 2,219	약 1,120
1984	약 2,499	약 1,120
1985	약 2,600	
1986	약 3,800	
1987	약 5,500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21.

〈表 2〉 동독인의 서독 여행

(단위 : 명)

연 도	동독 연금 수혜자의 서독과 서베를린 여행	연금 수혜 해당연령 미달인 동독 주민의 서독여행(서베를린 제외)
1970	1,048,000	
1971	1,045,000	
1972	1,068,000	11,421(11월/12일)
1973	1,257,000	41,498
1974	1,316,000	38,298
1975	1,330,000	40,442
1976	1,328,000	42,751
1977	1,323,000	41,462
1978	1,384,000	48,659
1979	1,369,000	41,474
1980	1,554,000	40,455
1981	1,563,000	36,767
1982	1,554,000	45,709
1983	1,463,000	64,025
1984	1,546,000	61,133
1985	1,609,000	66,000
1986	1,757,700	59,300
1987	2,204,200	1,200,000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 23 : *Zahlenspiegel BRD/DDR ein Vergleich*(Bonn : 1985). p.
118.

여 등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歐洲秩序의 개편에 있어서 獨逸은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강력한 「독일 제4제국」 형성을 염려하는 주변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시기문제일 뿐, 동서양진영에서도 기정사실화 해가는 추세에 있음에 주목을 요하고 있다.

〈表 3〉 동독인 서독이주

(단위 : 천명)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이주자수	13,675	10,463	11,000	39,460	24,000	24,642	17,711	22,000

※ 피난, 망명자 포함된 통계이며, 최근 동독인의 東歐諸國을 경유한 서독으로의 탈출추세는 급증하고 있음(出處 : 國土統一院).

(2) 경제교류

동서독간에는 기본조약의 체결 이전에도 끈질기게 소규모의 경제교류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 「單一經濟單位原則」 하에 외국무역이 아닌 국내교역(域內交易)으로 규정하고, 「無關稅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독은 유류, 섬유제품, 농산물, 갈탄 등을 비롯한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동독에서 수입하고, 동독은 철강, 화학제품, 공업생산재,

기계류 등을 서독에서 수입한다.¹³⁾

서독은 동독에게 Swing 차관을 비롯하여 차관기간의 연장, 對東獨銀行借款에 대한 政府保證, 10억 DM借款承認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

최근 동서독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동서독간의 연간 교역량은 매년 200억 마르크(120억 달러)에 달하며 상호 수

〈表 4〉 서독과 동독간의 수출현황

(1988. 12 현재)

연 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출		동독에서 서독으로 수출	
	금액(단위: 100萬마르크)	비 고	금액(단위: 100萬마르크)	비 고
1980	5,870		5,850	
1981	6,130	증가	6,350	증가
1982	7,080	증가	6,990	증가
1983	7,680	증가	7,560	증가
1984	7,250	감소	8,240	증가
1985	8,590	증가	8,160	감소
1986	7,400		7,300	
1987	7,800		7,100	
1988	6,800		7,300	

出處: 內獨省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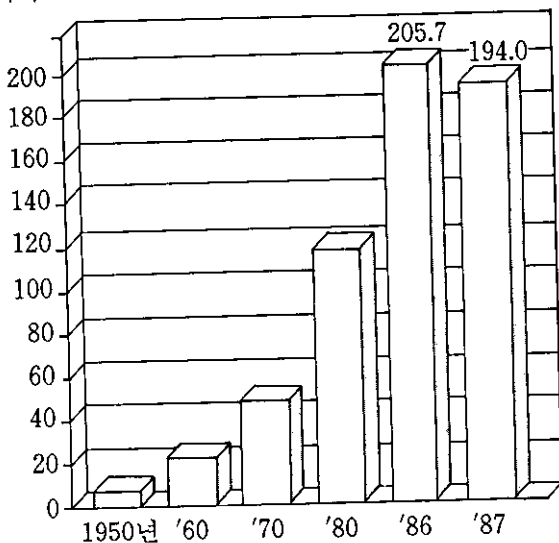
13) 동서독은 경제교류에 있어서 「輸入」을 「到着」, 「輸出」을 「供給」, 「貿易」을 「交易」이라는 用語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國內交易(域內交易)임을 강조하고 있다.

출입이 균형되어 있다.

1984년 12월 양독의 국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가성칼리를 채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1984년 11월 「自動車合作生産協定」을 체결하여 서독의 폴크스바겐자동차회사는 동독의 리첸츠에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30만대씩 생산하고 있다.

〈表 5〉 동·서독 교역규모

억마르크



出處：內獨省 資料

(3) 체육교류

동서독은 분단 이래 체육교류를 계속해 왔다.

1955년 올림픽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여 1956년 멜버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에도 동서독단일팀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동독선수들의 망명과 탈출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중단되고 말았다.

올림픽단일팀에서 국기는 黑·赤·朱黃 三色, 獨逸帝國 당시의 국기에 올림픽마크를 넣어 사용했고, 國歌는 베에토벤 교향곡 9번 「환희」를 연주했고, 선수의 유니폼에는 「Germany」라는 英文 標識를 사용했다.

서독은 1968년 뮌헨올림픽(1972)에 동독의 개별참가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도 서독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체육대회에 동독의 참가는 물론 서독내에서의 동독국기게양, 국가연주를 허용함으로써 체육교류를 정상적으로 실현했다.

1974년에 동서독은 「체육관계규칙에 관한 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체육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동서독은 매년 두 국가의 체육단체본부들 사이에 행사일정을 협의한다. 동독은 체육행사를 침단스포츠영역만으로 제한하려는 반면, 서독은 대중 및 청소년스포츠의 교류확대를 실현하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의견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육교류는

〈表 6〉 1966년 교류 재개 이후 동서독 스포츠 교류 실적

연 도	교 류 회 수 (회)		참가인원(명)	
	서독 및 서베를린 지역개최	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개최	서독측	동독측
1966	30	52	535	915
1967	40	48	707	832
1968	14	32	221	579
1969	14	43	157	835
1970	6	13	60	224
1971	10	8	123	101
1972	10	7	133	107
1973	9	2	124	2
1974	19	16	295	191
1975	28	25	376	235
1976	29	32	316	307
1977	27	35	298	335
1978	41	33	516	351
1979	35	33	435	301
1980	26	30	—	—
1981	32	31	—	—
1982	37	41	—	—
1983	37	38	—	—
1984	40	33	—	—
1985	36	35	—	—
1986	43	41	—	—

出處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4(Bonn : 1985), p. 43 ; 국토통일원, 「동서독 스포츠 협상 사례연
 구」(서울 : 1988), p. 54

순조롭게 이루어 가고 있다.

(4) 체신교류

동서독의 체신교류는 동서독기본조약체결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1970년까지 수동전화가 34회선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설되어 근년의 장거리직통전화회선이 1,517회선으로 연간 약 4천만 통화를 하고 있다.¹⁴⁾

한편, 우편물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968년 「우편·전화소통료청산협정」의 체결이후 우편물의 교류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동서독은 1976년 상호간의 우편·전화소통을 국제우편이 아닌 국내우편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郵便·電話協定」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수수료, 세관용 내용설명서 등, 국제전화업무에 필요한 수속을 생략하고 간소하고 편리한 체신교류를 실현하게 되었다.

서독은 동독에게 1976년부터 1982년까지 해마다 8천 5백만마르크의 체신요금을 지불해 왔다.

그리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2억마르크의 체신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遞信協定」을 맺기로 하였다.

14) 한국경제신문, 1988. 9.29자. 참조

〈表 7〉 서독과 동독의 전화통화 통계

(단위: 백만)

연 도	서독과 동독간의 전화	그 가운데 서베를린과 동베를린간의 전화
1969	0.5	
1970	1.7	
1971	1.8	0.8
1972	5.1	2.9
1973	5.8	2.8
1974	6.1	2.7
1975	9.7	3.8
1976	11.3	6.3
1977	12.8	7.2
1978	16.7	8.3
1979	20.6	8.9
1980	23.0	9.5
1981	23.4	8.7
1982	23.1	7.9
1983	23.2	8.2
1984	25.6	8.6
1985	26.4	8.8
1986	30.0	9.5
1987	30.0	10.0

出處: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7, p. 32.

〈表 8〉 동서독 우편교류 현황(1987 현재)

(단위 : 100만통)

연 도	편 지		소 포	
	서독 → 동독	동독 → 서독	서독 → 동독	동독 → 서독
1980	75	70	27	9
1982	74	98	25	9
1983	59	88	25	9
1984	62	85	25	9
1985	61	100	24	9
1986	63	105	24	9
1987	65	100	25	9

出處 : 內獨省 資料

현재 서독에서 주민들이 동독으로 전화하는 전화료는 무료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전화하는 전화료는 동독주민의 부담으로 「受益者負擔原則」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대부분 서독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편교류는 1일 1회씩 분단경계선의 일정한 교환장소에서 편지, 소포 등 우편물을 상호교환하고 있는데 연간 편지는 1억 6천만통, 소포 및 소화물은 3천 4백만통이 교류되고 있다.

우편교류 중 특히 편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발송하는 것이 많고, 반대로 소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우송되는 것이 많다.

(5) 문화교류

동서독의 문화교류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류가 많았다.

1986년 5월 6일 「동서독문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출판, 도서관, 기록보관소, 언론, 청소년교류 등 전반에 걸쳐 활발한 교류증진 터전을 마련했다.

이러한 문화교류사업은 오케스트라, 연극공연에서 시낭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많은 관중이 운집하는 큰 문화행사도 자주 교류되고 있다. 즉, 독일민족 공통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게 되고 토의를 전개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과 민족문화공동체인식을 일깨워가고 있다.

가) 예술교류

1953년부터 라이프치히합창단, 함부르크오페라단, 뮌헨필하모니 등의 교환공연을 실시해 왔다.

1972년 서베를린에서 동독의 오페라공연이 있었고, 서독의 부피탈에서 동년 11월 「엔겔스출생 150주년 기념공연회」가 열렸다.

동독은 1972년 서독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민간예술단으로 구성된 축하공연단을 파견하여 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서독주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게르만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동독의 라이프치히극단은 서독의 주요도시에서 세익스피어·햄릿을 순회공연한 바 있고, 동독의 피아니스트 안네로스·스미드의 피아노독주회를 서독의 수개도시에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미술교류도 활발하다. 「박물관전시품 교환전시회」를 비롯하여 「인상주의파전시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1986년 동독의 트렌스텐에서 열린 「바로크전시회」에도 서독주민 10만명이 관람하였다.

나) 언론·방송교류

동서독간의 언론인교류는 1987년 현재 서독의 수도 본에 동독 언론인 6명이 상주파견 돼 있고, 서독의 TV·라디오 등 17개의 언론사 특파원 19명과 편집기자 32명이 동베를린에 주재하고 있다. 특히 서독의 TV사 3개 지국이 동베를린에 상주하면서 직방송을 현지에서 하고 있다.

동서독은 아무런 제한없이 상대방의 TV·라디오방송을 어느곳에서나 자유롭게 시청·청취하고 있다.

동서독의 방송교류는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는 합의된 원칙에 따라 아무런 제재없이 취재활동이 보장되며 전파송출도 아무런 제재없이 송수신되고 있다.

신문·잡지교류는 서독에서 출간된 신문·잡지가 동독과 동베를린에 아무런 제한없이 반출·발송되며 자유롭게 구입·구독할 수 있다. 그러나 街頭販賣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판할 수 있는 조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동독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다) 학술교류

동서독은 학술분야의 교류도 매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찌기 서독의 경비부담으로 동서독 동수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독일어대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이 사전을 토대로 국어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오늘날 동서독은 언어(國語)의 異質化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동서독은 정치·이데올로기 분야가 아닌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잡지 및 연구논총, 辭典類 등의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출판비용은 서독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學術誌, 研究論叢, 蒐集資料를 출간할 경우 및 學術誌 시리즈를 발간할 경우에 협력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즉 발행자와 편집자의 일부는 서독내 혹은 동독내에 그들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인 처리와 인쇄는 대개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 인쇄비 등 일체의 비용은 협약의 범위내에서 서독이 지불한다.

또한 저명한 학자, 석학들의 학술강의 및 초청강의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 대개 동독학자들을 서독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동독의 스테판·헤임은 서독의 8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文學講演會」를 가졌고, 헤르만·칸트도 동서독에서 同時出版된

그의 소설에 관한 「特別講演會」를 서독의 여러대학에서 가졌다.

그 밖에 다양한 書籍交流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貨與도 실현되고 있다.

3. 중국의 통일문제

가. 중국·대만의 분단과정

(1) 제1차 국공합작(1924~27)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합작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1922년 11월 코민테른 제4차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중국은 帝國主義 打倒를 위해 反帝國主義 統一戰線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중국공산당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하여 民族革命運動에 가담한 노동자·농민을 포섭하여 선동하고 소부르주아계급과 연합하여 反帝國主義鬭爭을 전개하도록 한다”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1923년 1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國共合作原則」을 다음과 같이 결정·발표했다.

- ① 국민혁명의 주체세력은 국민당이다.
- ② 고립된 노동운동세력이 미약하며 당면과제로서 제국주의와

軍閥을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 ③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내에서 공산당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 ④ 국민당에 가입하여 노동자를 포섭한다.

당시 국민당을 영도하고 있던 孫文은 1921년 廣東政府의 총통이 되자 奉天軍閥 張作霖과 段祺瑞와 3角同盟을 맺어 북경정권을 장악한 오패부를 타도하려고 하였으나 陳炯明의 배반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손문은 구주제국과 일본에 국민혁명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오직 소련만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924년 1월 廣東에서 국민당 제1차 대회에서 공산당원의 국민당 가입이 허용되었다.

국공합작은 표면상 손문이 제시한 공산당 흡수방식이었으나 중국공산당의 합작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소련과 코민테른의 조정에 의한 것이었다.

국공합작후 공산당원들은 二重黨籍을 가지고 각종 출판물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전하였다. 그 결과 국민당원의 상당수가 공산당원으로 전향했다.

1925년 3월 손문이 갑자기 사망하자 국민당은 지도체제의 구심점을 잃게 되었고, 당지도부는 합작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었다.

1926년 1월 국민당 제2차 대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左派인 王朝明이 主席으로 선출되었다.

드디어 동년 3월 20일 蔣介石은 害黨分子 50여명을 제거하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 후, 국민당 좌파세력은 일방적으로 武漢으로 옮겨 이른바 「武漢政府」를 출범시켰다.

한편 蔣介石은 본격적인 공산당 소탕작전을 펴고, 좌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南京政府」를 수립함으로써 國共合作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2) 제2차 국공합작(1937~46)

1931년 7월에 일어난 滿洲事變은 급속히 확대되어 1932년 上海市街戰으로 돌입하자 중국국민들의 항일운동은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 기회를 당세확장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공산당은 대대적인 대국민 심리전을 전개했다. 즉 對日抗戰을 선언하고 內戰中止와 民衆武裝을 호소했다.

1936년 8월 25일 “국민당에 보내는 공산당의 글”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당의 장개석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에서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 했다.

한편 중국국민들은 일본의 내륙침공이 더욱 가열해 지는 전황 아래 內戰助長은 非愛國의이며, 滿洲를 잃으면서 까지 掃共強硬策을 지속하는 것은 反國家的이라는 여론이 비등해 갔다. 毛澤東의 「抗日民族統一戰線宣言」은 중국의 지식층,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게 되자, 장개석의 掃共作戰은 더 이상 강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시기에 장개석은 西安에 있는 예하부대인 張學良部隊를 방문하고, 「先掃共·後抗日」을 지시하였으나 장학량과 양호성(제17로군)은 이에 반대하고 장개석을 감금시켰다. 그리고 「內戰中止」, 「政治犯釋放」 등 「8개항」을 요구한 하극상의 사태가 일어 났는데, 이를 「西安事變」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개석은 1937년 9월 27일 “제2차 국공합작에 대한 담화”를 옥중에서 발표하였다.

결국 국공합작의 목적은 抗日鬪爭이었으나 공산당의 속셈은 抗日鬪爭보다 黨勢擴張에 있었다. 즉 모택동은 “7分發展, 2分對應, 1分抗日”이라는 3원적 전략을 내세워 국민당 정부를 타도하려고 획책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은 본격화 되어 갔다.

국부군은 공산당 토벌에 전력을 다했고, 공산군은 반격을 가하

면서 「飢餓反對·內戰反對·迫害反對」의 민중시위를 일으켜 국민당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도록 심리전에 전력을 경주했다.

그리고 공산군은 전국 각지에서 유격전술로 국부군을 급습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어 갔다.

드디어 공산군은 2백만 대군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양자강 유역의 주요도시를 점령했다.

마침내 국부군은 날로 열세해 갔고, 수 차례의 패전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 급기야 국민당 정부는 1949년 12월에 대만으로 급거 천도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은 「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으로 공산화 되었고, 대만으로 천도한 「中華民國」은 손문의 3民主義를 建國理念으로 승계한 정부의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두개의 中國」으로 分斷되었다.

나.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1) 중국의 통일정책

가) 모택동시대(1949~76)

1949년 중국대륙을 장악한 모택동은 정권의 성질을 「人民民主專政」⁵⁾이라고 칭했다. 그는 “피로써 대만을 해방하자”는 주장을 내세워 무력통일정책을 추구했다. 즉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대

만주민들의 봉기와 중국군의 결합으로 대만을 해방시킨다”는 전략하에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대만의 각 지방에 지하공작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무력통일정책은 좌절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남침은 한국과 대만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모택동의 대만침공계획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만문제를 국제적 분쟁문제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한편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경제원조를 시작하였다.

1954년 미국과 대만은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은 평화적 선전공세와 무력통일정책을 배합한 새로운 통일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4년 7월 周恩來의교부장은 “대만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평화적 방법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15) 1949. 6.30. 中共黨 創黨 第38周年記念式에서 “人民民主獨裁를 論함”의 연설문을 발표한 내용 참조(국토통일원, 1987, 「중국의 통일전선전략」 p.97)

내 놓았다.

그 후, 1958년 중국은 미·소의 대만정책을 시험해 볼 속셈으로 「金門島事件」¹⁶⁾을 도발했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三面紅旗運動」¹⁷⁾이 전개되었고, 경제적 실패에 이은 전대미문의 大饑饉이 있었고, 「文化大革命」¹⁸⁾으로 정치적인 권력투쟁의 혼란이 거듭되면서 통일정책은 자연스럽게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1964년 주은래는 “대만을 무력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대만해방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UN 혹은 어떠한 외국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중국은 UN에 가입하여 대만을 국제사회에

16) 金門島事件은 中國이 40일간에 걸쳐서 무려 포탄 45만발을 金門島에 퍼부은 무력도발사건이다.

17) 三面紅旗運動: ① 社會主義總路線, ② 生產大躍進, ③ 人民公社化운동을 말하며, 이 三面紅旗運動은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8) 文化大革命(1965. 11~1971. 9)은 毛澤東의 측근 文藝批評家 姚文元이 北京副市長 吳晗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毛澤東 主流派가 劉少奇, 鄧小平, 彭真등 實權派를 숙청하는 3년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쳐 毛澤東의 절대적인 指導體制의 확립과 林彪의 후계자 지명으로 귀착되었다. 文化革命을 “意識形態領域에서의 階級鬭爭”이라 규정했지만, 결국 三面紅旗運動의 失敗로 批判이 일자, 毛澤東 자신이 群衆과 紅衛兵을 동원하여 권력투쟁을 펼친 것이 되었다.

서 고립시킬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놓고 다시 和戰兩面의 이중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의 사망으로 「모택동시대」는 통 일정책에 별다른 진전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 등소평시대(1977~현재)

등소평은 1976년 4월 「天安門事件」¹⁹⁾으로 실각하였다가 1977년 7월에 復權²⁰⁾됨과 동시에 모택동의 후계자인 華國鋒을 밀어내고 집권하게 되었다.

1978년 12월 제11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등소평은 집권초기의 정책구상을 발표하여 「4大現代化路線」의 적극추진, 모택동사상의 재평가, 당의 중점활동을 계급투쟁보다 「社會主義近代化」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의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국교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중국은 이와같은 상황의 변화에 편승하여 종래의 무력통일정책을 지양하고 새로이 평화통일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19) 天安門事件; 1976. 4. 周恩來, 鄧小平등 「走資派」들이 「4大現代化」를 제기, 文革路線에서의 일대전환을 모색하게 되자 文革派들과 主導權鬭爭이 일어난 事件이다.

20) 1977. 7. 復權-中共黨 中央政治局 常務委員, 中央黨 副主席, 中央軍事委副主席, 國務院 副總理, 總參謀長.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1979년 1월 1일 대만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즉 “중국은 대만의 현존 사회·경제체제를 존중하고 대만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981년 9월 30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설위원회 葉劍英위원장에 의해 「平和統一 9個方案」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 9개방안〉

① 中華民族이 분열되어 있는 불행한 국면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中國共產黨과 中國國民黨 사이에 대등한 회담을 진행하고, 第3次 國共合作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완수하자. 쌍방은 대표를 보내 협상을 시작하자.

② 대만해협 양편의 住民들은 相互間 소식을 전하며 친척방문과 무역을 전개하자. 쌍방은 郵便, 通商, 海上往來, 親戚訪問, 觀光 그리고 학술·문화·체육교류에 관한 협상을 하자.

③ 統一後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自治權을 인정하며, 독자적인 군대를 保有할 수 있다. 中央政府는 臺灣의 地方事業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대만의 사회, 경제, 생활방식, 외국과의 경제, 문화관계는 개혁시키지 않는다. 개인재산과 주택, 토지, 기업소유권, 합법적인 계승권, 외국투자는 침해되지 않는다.

⑤ 대만당국과 각계대표인사들은 전국적인 정치기관의 지도적

직무를 맡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⑥ 대만의 지방제정이 난관에 부딪칠 때에는 중앙정부가 협조한다.

⑦ 本土에 돌아와 居住하려는 臺灣住民들은 자유롭게 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⑧ 대만의 경제인들이 本土에 投資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환영하며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⑨ 祖國統一은 國民義務이다. 中國은 臺灣과 협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위와같은 방안의 내용은 비록 「1國家 2制度」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방안은 「3通 4流」²¹⁾를 중심으로한 평화적 정치공세라 하겠다. 즉 중국의 평화 통일정책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특히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 대만의 반응을 탐색코자 하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

1981년 5월 15일 덩소평은 이른바 「祖國統一 6個原則」을 발표했다.

21) 「3通」이란 通郵·通商·通航을 뜻하며, 「4流」란 經濟·文化·體育·科學交流를 뜻한다.

〈조국통일 6개원칙〉

- ① 대만의 현정권 인정.
- ② 대만주민의 현생활수준 유지·보장.
- ③ 대만에 대한 외국투자 보장.
- ④ 대만의 군대 유지·보장.
- ⑤ 대만 지방정부의 인사결정권 인정.
- ⑥ 대만의 대외관계 유지·보장.

위의 내용으로 보아 「평화통일 9개방안」은 등소평의 「조국통일 6개원칙」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國家 2制度論〉

1984년 2월 22일 등소평은 브레진스키 미대통령특보에게 “중국통일 이후 대만은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대륙은 사회주의를 계속 실행할 것이다. 즉 1個中國에 2個制度를 유지할 수 있고 쌍방은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언급함으로써 「1國家 2制度」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동년 6월 30일 중국의 시사주간지 「遼望」과의 회견에서 “중국과 대만은 서로 상대방을 삼킬 수 없을 것이며, 홍콩문제를 해결한 「1國家 2制度」 방식이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國家 2制度論」의 내용이 1984년 12월 19일 등소평과 대처수상 사이에 체결된 「홍콩返

還協定」²²⁾에도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國家 2制度論」은 중국정부 산하에 특별행정구를 허용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1개 국가내에 상호 대립되는 2개의 독립된 정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2) 대만의 통일정책

가) 장개석시대(1949~75)

1949년 장개석은 대만으로 천도한 즉시 본토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22) 홍콩반환협정의 내용 :

- ① 홍콩은 1997년 7월 1일을 기해 中國 中央政府에 직속되는 「特別行政區」가 되며 外交·國防 이외의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보유함.
- ② 홍콩特區에는 독자적인 행정·입법·사법권을 부여하며 현재의 司法制度는 그대로 유지함.
- ③ 홍콩政府는 현지주민으로 구성되며 行政府의 首班은 選舉 또는 協議에 의해 선출하고 中國이 임명함.
- ④ 현행의 社會·經濟制度 및 생활방식은 그대로 존속하며 사상, 언론, 집회, 종교, 인신의 자유는 법률로 보장되고 개인의 所有權, 財產繼承權, 外國資本은 법률의 보장을 받음.
- ⑤ 홍콩은 自由港, 國際金融중심지로서의 지위와 독립된 관세구역을 유지하며 홍콩달러의 통용을 보장함.
- ⑥ 홍콩은 獨立財政을 수립, 집행하며 中國은 홍콩에서 稅金을 징수하지 않음.
- ⑦ 홍콩은 「홍콩·차이나」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 및 國際組織과 相互互惠의 경제·문화관계를 수립하여 필요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⑧ 홍콩 자체의 治安은 홍콩에서 책임을 짐.

대만의 당시 통일정책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는 失地回復政策으로서 본토의 공산정권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영토, 인구,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열세인 고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었고, 국방안보에 전력을 다 하면서 국력신장을 위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1958년 「金門島事件」으로 중국의 무력침공을 받은 대만은 전력을 다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갔다. 한편 중국본토에 대한 공작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총통직속으로 「大陸光復設計委員會」²³⁾를 설치하여 대륙에서의 공산당에게 참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본토수복 후 실시할 제반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7分敵後 3分敵前」의 원칙을 세워 중국대륙에 관한 심리전 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갔다.

장개석은 중국대륙에서 「文化革命」이 절정에 도달하고 동서진 영간의 화해기운이 싹틀 무렵인 1967년에 대만을 중국전통사상

23) 大陸光復設計委員會는 總統直屬 臨時機構로, 그 임무는 大陸光復을 연구하는 것이다. 構成은 第1回 國民大會 全體代表, 行政院 設計委員會委員, 總統이 任命한 者로 한다. 會議는 每年 1回, 研究方案을 檢討·議決한다.

에 입각한 「反共復國의 基地」로 삼기 위해 중앙행정기구에 「安全處」를 설치하고 이른바 「中華文化復興運動會」를 조직·운영했다. 이 운동의 전개는 본토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선전공세의 일환이었다.

1966년 3월 장개석은 “국민당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하여 「自由 6個項」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公約 3章」을 발표했다. 즉 「自由 6個項」에는 “중국본토의 노동자들을 노예와 박해에서 해방시키고, 고용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公約 3章」은 “중국본토로 부터 귀순하는 장병의 자유보장 및 보상을 해 준다”는 등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장개석시대의 통일과제는 「光復大陸 建設臺灣」, 「實行 3民主義 消滅共產徒黨」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대륙본토의 광복은 대만 건설의 방식으로 하고 삼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결국 공산도당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나) 장경국시대(1978~87)

1975년 장개석총통이 사망하자 1978년 2월 제1기 국민당전당대회 제6기 전체회의를 통해 장경국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1979년 중국의 엽검영의 「平和統一 9個項」의 제의가 있는지 불과 1주일 후, 장경국총통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선전에 불과하고 중국국민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오로지

孫文의 삼민주의에 의하여 중국통일이 달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孫運璿수상은 “중국의 평화협상을 대만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자기멸망의 길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평화협상제안과 「3通政策」, 「4大交流」 등은 대만을 공산화하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만약 중국본토와 대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면의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평화통일의 조건들이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오랜 우방국인 미국의 단교조치와 중국의 평화공세라는 양면적인 충격을 받음으로써 처음부터 중국의 평화협상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980년 10월 10일 장경국총통은 「쌍십절기념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國共不接觸·不協商·不妥協의 「3不政策」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3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

1981년 4월 5일 국민당 제 12기 전국대회에서 “3民主義에 의한 反共報國만이 통일의 길임”을 결의하고, 이에 「3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3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중국건설.

② 反共報國 행동강령의 실천.

③ 대만건설의 경험을 통한 통일이후의 大陸再建

이와같은 통일방안은 장개석총통 이래 국민당의 행동강령과 통일목표를 그대로 재천명한 것이며, 국민당이 대만으로 천도한 이래 대륙정책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의 평화통일정책의 제의는 평가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일체의 협상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동시에 대만의 경제건설이 모범적이고 중국보다는 몇 배나 풍요롭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평화공세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소화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민약 대만이 중국의 협상에 응할 경우, 중국이 대만문제를 내 부문제로 전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대만이 주장해 왔던 「正統中華民國政府」로서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주민의 대만방문, 학술교류 등과 같은 對中國交流를 추진하지는 여론이 확산되면 현 정부의 지도이념 상실과 함께 국론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만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統一 3大原則》

① 윤리로서 국가의 자유·평등을 실현하여 침략전쟁을 반대

한다.

② 민주로서 정치의 자유·평등을 실현하여 독재정치를 반대한다.

③ 과학으로서 경제적 자유·평등을 실현하여 集體經濟를 반대한다.

《統一의 目標》

① 자유·민주적 富의 分配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② 민주적 憲政을 실현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③ 中華文化를 부흥시키고 윤리·도덕을 회복하며, 가정제도를 유지·보호하여 명랑한 사회를 건설한다.

④ 중국의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공산당의 국가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폐지한다.

⑤ 世界赤化의 야욕을 없애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전쟁 대신 상호협력, 일당독재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⑥ 人民公社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생산품은 생산자가 소유케 한다.

⑦ 노동착취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대우를 향상시킨다.

⑧ 경제통제와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자

유경제체제를 확립한다.

⑨ 특권계급이익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여 富의 配分을 실현한다.

《統一政策의 基調》

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이 正統政府이다. 대만은 전체중국
의 대표로서 공산독재에 신음하는 본토를 구출할 사명을 지닌다.

② 대만이 3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산독
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國共合作에 앞서 공산주의 理念을 포
기해야 한다.

③ 과거 두 차례에 걸쳐 國共合作에서 국민당 정부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제3차 국공합작제의(평화통일 9개방안 등)
도 위장평화공세로 규정하고, 이 제의를 「티벳트 방식의 대만해
방²⁴⁾」으로 믿고 있다.

다) 이동희시대(1988~현재)

장경국총통의 사망으로 과도적인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李登輝

24) 「티벳트방식의 대만해방」이란, 1951. 5. 23 「중국·티벳트협상」에서 「1國家 2制度論」의 원칙에 따른 내용으로 티벳트의 자주권을 인정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59년 「티벳트 民主改革」을 단행하여
「티벳트 폭동」을 야기시켰고, 드디어 티벳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를 印度로 강제 추방시킨 후, 티벳트를 중
국에 통합시킨 방식을 말한다.

黨主席은 1987년 7월 12일 제 13기 국민당 전당대회에서 대만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통에 추대되었다.

이동휘총통은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을 견지하여 「3不政策」과 「3民主義에 의한 統一方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통일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대만의 정치적 民主化 경제적 自由化 사회적 多樣化 문화적 中國化인 「4大化」를 기어코 대륙에 확산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4大化 推進事項〉

- ① 대륙의 해외유학생 및 학자들과의 접촉, 연계의 확대.
- ② 대륙과의 間接交易 및 필요한 대륙원자재 수입의 확대.
- ③ 대륙친척방문 및 問喪·問病을 위한 대륙주민들의 대만방문 허용.
- ④ 대륙에서 출간된 非宣傳性 출판물에 대한 수입의 허용.
- ⑤ 대만언론기관의 대륙취재 및 학술교류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처리.
- ⑥ 국제올림픽위원회규정을 기준으로 국제체육행사에 관련된 선수단의 교류문제 긍정적 검토.
- ⑦ 대만의 각 대학에서 대륙연구 진작.
- ⑧ 정부 및 국민당에 「大陸關係部署」²⁰⁾의 설치·운영을 본격화 하기로 함.

대만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는 변화가 없지만 중국과의 접촉이나 거래에 관해서 다소 신축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 중국·대만의 교류현황

(1) 인적교류

1987년 9월 대만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自立晚報의 기자 2명(徐路, 李永得)이 일본을 경유하여 전격적으로 북경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자유취재활동을 통해 “북경은 대북보다 훨씬 뒤떨어진 도시”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도 중국측은 吾不關焉, 대만측은 현행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형식적인 기소조치를 했을 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987년 11월 2일 대만정부는 대만주민들의 중국대륙방문을 허용함으로써 38년만에 인적교류의 길을 터 놓았다.

그리고 1988년 10월 24일 대만정부는 중국주민의 대만방문도 허용함으로써 인적교류는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게

25) 대만은 앞으로 大陸政策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내외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국민당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위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를 두었다.

되었다.²⁶⁾

대만측 발표에 의하면 1987년 1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 적십자사」에 본토방문을 신청한 수는 무려 2만명에 달한다.

대만은 현재 3等親 까지만 본토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방문자의 대거신청이 우려되어 일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일 뿐,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12월 4일자 人民日報에 의하면 “12월 1일까지 대만주민의 중국방문자수는 1만 3천명에 이른다²⁷⁾”라고 보도했다.

대만주민에게 본토방문의 문호가 개방된지 2년미만에 벌써 수십만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방문자들 중에는 입법의원, 학자, 언론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망라되어 아직도 적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간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실현되고 있다. 이들 본토방문자들이 중국에 사는 가족·친척들에게 「紅包」라는 이름의 「寸志」 봉투를 전해주는 액수가 1개월에 1억불 정도

26) 本土人入國措置緩和, 問病·葬禮式 참석을 이유로 中國住民이 대만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을 발표했다(대만내무부차관莊降盛, 1988. 10. 24. 記者會見).

27) 이 가운데 홍콩경유 방문자는 4,593名, 기타 福州, 廈門, 上海, 北京經由 訪問者는 8,000名 以上이 된다. 日字別로 보면 11. 3~11. 25에 전체의 80%인 8,669名에 달한다(1987. 12. 4日字, 「人民日報」參照).

로서, 연간 약 12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외화획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주민의 대만방문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직 도 대만주민의 일방적인 본토방문으로 인적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대만은 「不鼓舞·不協助原則」으로 고무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지만 「不禁止原則」으로 금지하지도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경제교류

인적교류가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교류도 추진되고 있다.

홍콩政廳의 발표에 의하면 “1987년 10월 대만측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부터 사들인 수입량은 前年對比 9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교역량은 날로 증가하여 1987년 15억 1천만불(수입 2억 9천만불, 수출 12억 2천만불)이던 것이 1988년에는 25억불을 넘어섰다. 그리고 1989년에는 30억불 이상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貿易總量 1천억불 중에서 25억불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의 폭이 급증되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것이다. 대개 주요수출품은 반제품기계류, 섬유류이며, 주요수입품은 천연원자재류가 대종을 이룬다.

또한 대만의 기업들이 본토에 투자하는 바람이 한창 일고 있다. 신발·전자제품·완구류 등을 생산하는 대만의 기업들이 홍콩을 통한 본토에 직접 투자한 액수는 2억불 규모에 달한다. 현재 65건에 달하는 실적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은 1988년 8월 원자재·약초·농산물 등, 50개 품목의 중국상품을 수입금지품목에서 해제한 데 이어 1989년 1월 18일 진주·참깨·화학제품·원목 등 40개 품목에 대한 간접수입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는 민간차원의 교류에 국한되며, 쌍방은 이에 대한 묵인과정을 거쳐 해상교역이나 간접교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1987년말 현재 외화보유고는 650억불, 1인당 국민소득은 4,687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의 5백배에 달하는 외화보유고, 약 16배에 달하는 국민소득에 해당된다.

대만으로서의 이와같은 富의 배경을 이용하여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중국과 본격적인 通商도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²⁸⁾

28) 대만 국민당 비서장 李煥의 「政治反功」 참조.

(3) 체육교류

체육교류는 그동안 활발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국제대회를 통하여 자주 교류해 왔다.

대만은 1982년 대북에서 열린 「세계여자자연식정구선수권대회」에 중국을 초청했으나 중국은 거절했었다.

그러나 대만은 국제대회에서 신축성을 보여 1984년 「LA올림픽대회」와 「제 13 차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국호 대신 「중국·대북(차이니스·타이페이)」라는 명의로 國旗나 國歌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해 왔다.

1989년 1월 25일 대만올림픽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自國呼稱方式을 강요하면 국제대회에 불참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中華·臺北」을 「中國·臺北」으로 강요하는 것은 중국본토의 지방정부식의 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9년 4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소년 체조선수권대회」에는 「中國·臺北」 명칭으로 참가했다.

(4) 기타교류

1989년 1월 11일 대만의 법무부는 「大陸接觸法」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국대륙과의 접촉으로 야기되는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형사·행정관계 등, 3부분의 전문 40

조에 이르는 「海峽兩岸二民法律關係暫定條例」의 초안도 마련했다.

한편 중국은 1989년 1월 18일 국무원 산하에 경제·문화·체육·학술 및 인적교류 확대에 대비한 「臺灣事務辦公室」을 신설했다.²⁹⁾

1989년 1월 15일 중국의 郵電部는 “중국·대만간의 직접통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1989년 1월 16일 대륙본토에 보내는 民間郵便物(매일 1만여통)을 적십자사를 통한 접수·郵送方式에서 대만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고, 우편배낭포대를 그대로 대륙본토에 보내는 직접통신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같은 중국·대만의 일련의 조치가 발표되는 것으로 보아 우편물·전화통화의 교류는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에 학술교류도 국제학술회의에 대만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이 함께 참가하고 있고, 대만출신 유학생들과 중국출신 유학생들간에 제3국에서 자유롭게 접촉하여 친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외거주 華僑들을 통하여 중국본토에 있는 일가·친척들과 서신교환은 물론 인적왕래도 빈번히 실현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3通」 방향으로, 대만은 「3不」 방향을 내세우면서도 점차 「3通」으로 점차 접근해 가고 있다.

29) 新華社通信, 1989. 1. 18字 參照.

4. 베트남의 통일문제

가. 월남·월맹의 분단과정

베트남은 19세기 이래 약 8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1940년에 일본군이 진주하여 5년간 점령 통치를 했다.

그 후, 1945년 8월 일본군의 항복으로 영국과 중국이 남북으로 점령하였는데 프랑스는 먼저 영국과 뒤이어 중국과 협정을 맺어 베트남을 되찾았다.

1946년 12월 29일 월맹군이 프랑스군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군과 월맹군 사이에 제네바회담에서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월맹군, 남쪽은 프랑스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 휴전협정의 내용이 결국 베트남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네바회담의 「휴전협정」에 의하여 1956년 7월 베트남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월맹은 독자적인 공산정권수립에 광분하고 있어서 결국 자유총선거는 실현되지 못했다.

1954년 10월 11일 월맹은 호지명이 이끄는 공산정권이 들어서

게 되었다. 그리하여 월남은 독자적으로 1955년 10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선거를 실시하여 고·딘·디엠대통령을 선출하였다.

1955년 1월 20일 미국과 프랑스의 협상³⁰⁾에 따라 프랑스군은 철수하고 미국이 월남지원을 맡게 되었다.

나. 월맹의 적화통일 전략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에 의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분단되자 베트남 전역에서는 주민의 대이동이 실현되었다. 북에서 90만명의 피난민이 남으로 이동했고, 남에서 9만명의 월맹군이 북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때 월맹은 약 5천명의 공산당 정치공작원을 월남지역에 잔류시켜 놓았다. 월맹의 전략은 “이들 정치공작원들로 하여금 태업·파업·반정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월남정국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력을 약화시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월남을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월남은 이러한 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 나아갔다. 즉 1955년 10월에 출범한 월남정부는 「特別法」을 제

30) 미국은 베트남군 10만명과 예비군 15만명을 갖추기로 한 프랑스와 베트남측과 합의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군사교관을 프랑스군 지휘하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956년 4월부터는 이 훈련을 「미군 사고문지원단(MAAG)」이 맡도록 합의했다.

정하여 파업을 주동했거나 국가보안을 해친 자에게는 사형·종신형 등 엄벌로 다스렸다.

그러나 월남정부의 강력한 반공정책이 실현되면서 반정부세력은 더 늘어났고, 地下化 됨으로써 더욱 어렵게 되었다.

월맹은 적화통일전략을 武力行使로 바꾸어 테러·파괴행위를 감행했고, 특수훈련을 받은 남부출신 월맹군을 침투시켰다.

1960년 9월 베트남노동당 제3차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현단계 베트남 혁명에는 두 가지의 전략과업이 있다. 첫째는 월맹의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美帝와 그 하수인들의 통치질곡으로 부터 월남을 해방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일체성·독립·자유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략과업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상호 촉진적 관계에 있다. …… 월남에서의 혁명을 위해 우리는 모든 민족적, 민주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확대·강화해 나아감으로써 美帝와 그 하수인을 고립시키고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다그쳐야 한다. …… 월남에서의 혁명적 투쟁의 완전한 성공을 위하여 노동자·농민·병사들을 망라하는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조직하여 美帝와 그 하수인에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³¹⁾

31) Department of State, A Threat to the Peace, Part I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p. 1~4.

이와같이 월남의 적화통일전략은 「월남혁명의 완수」라는 이름으로 “월맹의 사회주의혁명·월남의 적화혁명”이라는 2단계 전략구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1960년 11월 11일 월남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뒤이어 1963년 11월에 다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고·딘·디엠대통령 형제가 살해되고, 등·반·민소장이 중심이 된 군사위원회가 실권을 잡게 되었다.

월남은 정치적 혼란이 가속되었고, 3개월 후 1964년 1월 30일에 등·반·민은 고엔·칸소장에 의한 쿠데타에 다시 전복되었으며, 그 후, 1964년 11월 4일 탄·반·홍首相이 이끄는 民間政府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달도 못되는 12월 20일 다시 극우파 소장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탄·반·홍정권이 복권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정권이 軍部에 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1960년 12월 20일 「월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Veit Cong)」이 결성되었다.

월남에서의 베트콩세력은 급속히 농촌으로 확대되어 갔다. 즉 베트콩세력은 1964년 당시 “월남인구의 절반인 7백만명, 국토의 3분의 2이상을 장악했다.”³²⁾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확산되어 갔다.

월맹은 「월남민족해방전선」을 앞세워 월남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한편 월남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제2의 정부체제」를 갖추고 정치력·군사력을 배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즉 월맹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統一部」를 조직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원과 전략전술을 총지휘하였다. 「통일부」에서 수립된 모든 정책은 즉시 베트남에 하달되었다.

또한 「월남민족해방전선」은 언제라도 정부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군사위원회」·「대외연락위원회」·「교육·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하였고, 지방행정을 위한 「지구위원회」·「省委員會」·「市·郡委員會」까지 조직하였다.

최초로 美軍部隊가 월남에 상륙한 것은 1961년 12월 11일이었다. 1962년 2월에 「美軍支援司令部(MAC)」가 창설되었고, 뒤이어 처음으로 베트남소탕작전이 시작되었다.

1964년 5월 9일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軍派越을 호소하게 되었고, 동년 7월 5일 월남은 우리나라에게 軍派越要請을 하게 되었다.³²⁾

32) 월맹 공산당 중앙위원회회장의 1964년 1월의 보고서 참조(동국대, 안보연구소편, 安保研究 제 18 호, 1989, p.112).

33) 1964. 9. 22 한국군 의무부대 1개중대 제 1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이 처음으로 파월되었다.

1964년 8월 월맹에 의한 미구축함이 통킹만에서 공격을 받은 「통킹만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의회는 존슨대통령에게 “월맹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월남의 정국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계속 혼란의 연속이었다. 1965년 1월 27일 정권은 다시 고엔·칸소장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1965년 2월 21일 군사위원회는 고엔·칸정권의 퇴진을 결의했고, 동년 6월 19일 구엔·카오·키 공군사령관이 首相이 되고, 구엔·반·티우중장이 의장에 취임하는 國家指導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월남은 정부수립 이래 8번째 정권교체를 한 셈이다.

1967년 총선거에서 구엔·카오·키가 제거되고, 구엔·반·티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치지도층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군대의 士氣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964년에 40만명의 병력 중 2천 3백명이 부대를 임의로 이탈했다. 월남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민심이탈은 상대적으로 베트남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미군은 계속 증가되어 62만 5천명을 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에서 온 支援軍도 6만 2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戰勢는 호전되지 않았고 미국내의 反戰論議와 병력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25일 미국의 대통령보좌관 키신저와 월맹의 레·득·토 사이에 파리에서 비밀협상이 열렸다.

1971년 7월 9일 미국은 「베트남화계획(Vietnamization Program)」³⁴⁾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73년 1월 23일 키신저와 레·득·토 사이에 우여곡절 끝에 「休戰協定」³⁵⁾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년 1월 28일 오전 8시부터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휴전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6월 13일 美國·越南·越盟·베트콩의 대표간에 새로운 「休戰協定」을 조인하였다.

그래도 월맹군의 공세는 치열했고, 월남은 전선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월남군 4개군단이 붕괴되고 베트콩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34) 베트남화 계획(Vietnamization Program)이란, 미국은 北部省 방위 책임을 월남군에게 인계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군도 1967년 12월부터 1968년 4월까지 완전 철수했다.

35) 「休戰協定」: 1973. 1.29. 파리에서 調印. 미군포로석방, 잔류미군철수, 휴전감시를 위한 국제관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맹은 미군포로 67명을 석방, 미국 민간인, 기술자 8천 5백명을 제외한 모든 주 월미군이 철수했다.

다. 베트남 적화통일의 교훈

월남의 참모총장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던 카오·반·비엔 장군은 월남의 패망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① 매우 불리한 파리휴전협정을 월남정부가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② 미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 국가적 公約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미국의 갑작스런 군원의 대폭적인 삭감은 월남국민과 군대의 士氣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④ 티우대통령의 중대결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제2군의 철수가 급히 행해져 작전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⑤ 미국이 公約을 위반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화해하기로 한 정책변화를 월남정부는 깨닫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월남의 패망원인을 규명하면서 월남정부의 잘못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의 배신에 패망원인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월남의 패망, 즉 베트남의 적화통일은 어떠한 意味를 지니는 것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베트남의 적화통일은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① 월남인들은 外勢에 대하여 끈질긴 저항의식을 지녀왔다는 점이다. 월남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外勢에 대하여 끈질긴 저항의식을 지니며 살아왔다. 그러한 역사의식은 중국이든, 프랑스·영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1천년의 지배였든, 혹은 1백년의 지배였든, 8년의 지배였든 관계없이 나타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民族主義運動으로 발전하여 월남정부와 미국을 그러한 저항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② 농민들의 지지가 정치변화의 승패를 좌우해 왔다는 사실이다. 월남의 역사에 나타난 격변기의 특징은 농민의 지지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적의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농민의 마음이 정해지기만 하면 승리는 농민의 지지를 얻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월맹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베토콩은 이 사실에 행동강령을 맞춤으로써 버티어 낼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③ 외국군은 성공적인 결과를 남기고 돌아간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內戰狀況下에서 일방이 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外國軍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라도 끝내 승리한 경우가 없었다. 태국군이 그랬고, 중국군·프랑스군이 그랬으며, 일본군이 그랬다. 월남을 프랑스 植民支配의 연장선상에 두고 미국을 프랑스의 代

置勢力으로 몰아갔던 월맹의 전략은 그들의 歷史的·文化的 인식과 相通하는 것이었다. 특히 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미국이 월남의 역할까지 도맡은 代理戰性格을 띠 때 더욱 그러했다.

둘째, 정신적 戰力이 물리적 戰力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주었다.

미국군의 최첨단 무기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도 무력이나 기술수준이 훨씬 낮은 월맹군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정신적 전력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좋은 예가 된다.

월맹과 베트남은 교묘한 방법으로 월남과 미국측의 物量政策을 역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精神戰力을 키워갔다.

셋째, 월남전쟁은 이데올로기의 兩分法的 戰爭觀에 중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參戰目的은 共產勢力을 막는데 있었다. 그리고 월남정부의 정통성도 反共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自國의 利益 때문에 승산없는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철수하여 베트남 적화통일의 길을 터 주고 말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共產化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월남전쟁을 이데올로기전쟁이라고 보기 보다는 國益爲主의 實利戰爭이라는 批評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월남패전과 월맹의 적화통일의 성공에서 무슨 교훈을

찾아야 하는가?

① 국가안보는 자주국방에 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생존과 통일번영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強者存」의 철칙과 같이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② 월남 정국의 계속된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치지 않았던 쿠데타는 결국 패망을 자초했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쿠데타에 의한 초대대통령 고·딘·디엠의 살해로 시작되어, 수 없이 반복된 정권의 교체는 부침하는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실추시켰고, 정권쟁탈에 혈안이 된 일부 몰지각한 군부의 쿠데타에 전쟁중인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과 정통성 있는 강력한 정부, 그리고 국민화합에 의한 국력신장이 국가안보의 첩경임을 깨달아야 한다.

③ 월남에서 자생한 용공세력인 베트콩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것이 패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창설된 「월남민족해방전선」이라 불리는 용공세력인 베트콩은 「해방농민협회」, 「해방노동자협회」, 「불교·카톨릭단체」 등, 20여개의 재야단체로 결성되었다. 베트콩세력은 월맹에서 밀파된 공작요원이 아니라 월남내에서 자생된 좌경용공세력이었다.

그 세력이 점차 전국 각지의 농촌에 까지 파급되어 급기야 월

남군은 베트남에 항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④ 월맹의 적화통일의 전략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유사하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60년 9월 베트남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월맹의 사회주의 수행, 월남해방의 성취”라고 했듯이 「朝鮮革命의 전국적 勝利」라는 적화통일을 위하여 김일성은 북한을 사회주의의 낙원을 건설하여 혁명의 참모부로 하고, 남한지역의 혁명을 통한 공산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즉 2단계 統一戰略의 構圖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統一戰略과 그 戰術的 운용면에서도 월맹이 前衛部隊나 戰線組織을 그 자체로서 革命力量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革命基地로서 자기들의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장용으로 활용하였듯이 북한도 그러한 戰略戰術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우리로서 한때는 군사적 파병까지 지원해 주었던 우방국이었던 월남의 패망원인을 규명하고 그에게서 교훈을 찾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착잡하고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월남의 교훈을 배워 통일안보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무모한 김일성의 대남적화야욕을 분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통일전망)

가. 동서독의 통일전망

동서냉전체제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지고 동서독의 통일가능성은 급속히 可視化되고 있다.

베를린장벽의 철폐는 전쟁의 산물인 분단된 동서독의 재통합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12월 19일 제5차 「동서독정상회담」에서도 동독의 모르도프수상은 “통일논의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지만, 서독의 콜수상은 “통일논의가 주요 의제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문제는 핵심의제의 하나가 되었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방한다해도 점차 가장 큰 현안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동서독 통일논의는 수년간 美蘇軍縮協商과 脫이데올로기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동구라파국가들의 정치개혁 등으로 서서히 활기를 띠어왔다.

서방지도자들이 일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독일통일의 가능성으로 세계정치의 構圖가 일시에 불안해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까지 “독일의 통일은 우려할 것이 못된다”라고 여유를

보였던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도 급진전되는 동서독의 통일 가능성을 보고 “국제정치의 세력불균형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대처수상도 “지금은 보다 냉철한 머리로 동독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동서독 통일논의의 확산에 당혹감을 나타낸 발언이다.

동서독의 통일은 구라파의 군사·정치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 동서구라파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독의 개혁은 자유선거, 결사 및 이데올로기의 자유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동서독의 통일논의는 서독의 구상대로 진행되기는 힘들지만 새로운 사태발전에 직면하여 서독이 제시한 2개국가의 연합형태의 통일방안과 같이 변형된 통독의 길이 논의될 것이다.

현재 동서독에는 NATO와 WTO軍이 각각 38만명 이상의 소련군과 NATO軍 25만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들 의도대로의 통일논의는 힘들며, 또한 통일형태도 NATO軍 WTO軍형 완전히 철수한 후, 군사적으로 중립화의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점진적인 「東西獨聯合體」를 형성하든지 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동서독은 「居住移轉의 自由」라고 볼 수 있는 人的交流

의 완전 自由化에 이어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동이익의 추구 등으로 「게르만민족의 저력」을 계속 과시해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같은 동서독 관계의 변화는 통일국가라는 목표가 전제된 것이며, 강대국들의 독일통일에 대한 의구심과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 민족이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민족으로서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 치는 통일노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분단 45년만에 통일의 길에 성큼 접근한 동서독을 지켜 보면서 남북한 모두가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산권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자세습체제구축」과 「남조선적화전략」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이 하루속히 조국통일의 참된 길을 찾아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동독지도자의 결단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깨달아 주기를 촉구한다.

나. 중국·대만의 통일전망

중국·대만의 통일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1國家 2制度論」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만의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981년 9월 중국의 葉劍英이 발표한 「平和統一 9個項」에 따른 「1國家 2制度論」이 통일정책이며, 이를 성취시키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3通 4流」를 실현하자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영국과 체결함으로써 「1國家 2制度論」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만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통하여 튼튼한 통일기반을 다지고 3民主義의 성공적 경험을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일을 성취시키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안한 「3通 4流」 문제는 점차 대만주민의 깊은 관심속에 접촉의 기회가 늘어가고 있으며, 대만정부도 「大陸接觸法」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3和政策」³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류협력은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대만에 있어서 세대교체의 현상은 통일환경의 조성에 중요한 변수로 된다. 중국본토에서 이주해 온 인사들은 점차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들의 자제들에 의하여 각 분야에 대체되

36) 「3和政策」이란, 平和共存, 平和競爭, 平和統一의 정책을 말한다.

어 가고 있다. 그들은 대만이 「全中國의 代表政府」라는 神話에 공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부모와 같이 본토에 대한 향수나 이산의 고통, 반공의식의 열기가 강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에 중국은 1989년 6월 4일 「天安門事態」의 후유증과 최근 동구공산국들의 개혁의 영향에 따라 공산체제에 심한 갈등과 노선의 혼미속에 改革과 開放의 既存政策을 조정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고실권자 등소평의 퇴진과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指導體制의 出帆이라는 過渡體制에 놓여 二重苦를 겪고 있어서 통일정책의 추진은 상당기간 踏步狀態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다. 한국과 독일 통일문제의 共通點과 差異點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가)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

○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戰後處理過程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강제분단되었다.

○ 독일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대강국에 의하여 독일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분단되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그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강대국들에 의하여 강제분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이데올로기의 對峙狀況

○ 한반도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自由民主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 共產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남북한은 이데올로기상의 對峙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 독일은 서독에 1949년 9월 7일 自由民主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부가 수립되었고, 동독에 1949년 10월 7일 共產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동서독은 이데올로기의 對峙狀況으로 분단되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南北으로, 東西로 다 같이 自由民主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로 思想과 理念이 대립되는 양상으로 對峙

狀況에 놓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주변 4강의 影響力

○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미국·일본·중국·소련등의 주변 4강에게 외교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國際權力과 政治勢力的 균형을 깨지 않는 調和있는 統一努力을 하면서 점차 民族自決의 領域을 넓혀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 독일의 統一問題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등, 주변 4강의 影響力圈內에 있는 문제로서 그 강대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그 分斷克服이 단순한 民族內部的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強制分斷을 초래한 강대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4) 統一不實現의 현상

○ 한국은 분단 이후, 45년이 지나오는 동안 통일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 독일은 분단 이후, 「東西獨 基本條約」의 체결로 상호간 信賴回復과 交流協力을 도모하여 相扶相助하고 있으나,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과 독일은 다 같이 統一實現을 위한 노력을 부단

히 지속해 왔으나 아직도 統一을 이루지 못한 分斷國家라는 現實狀況에 공통점이 있다.

나. 차이점

(1) 統一의 歷史

○ 한국은 역사적으로 1300년에 이르는 오랜동안 單一民族으로서의 生活文化圈과 統一國家를 繼承發展시켜 왔다. 즉, 668년 新羅의 3국통일로 부터 1945년 분단될 때까지 무려 1300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

○ 독일은 통일의 역사가 불과 7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1871년 獨逸帝國의 성립으로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을 통합한 獨逸統一을 실현한 시기로부터 1945년 분단될 때까지 75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

(2) 分斷의 經緯

○ 한반도의 분단은 카이로·테헤란·알타·포츠담등, 강대국 회담에서 일본의 항복이전에 논의된 바 없었다. 38도선 南北分斷은 1945년 8월 11일 日本軍의 降伏接受를 위한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미·소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敗戰國에 대한 膺懲措置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한민족의 勢力弱화를 위한 措置가 아니었다.

○ 독일의 분단은 戰時에 소집된 강대국회담(알타·포츠담회담)에서 이미 합의되었다. 이 합의내용에 따라 동프로이센을 소련과 폴란드에게 병합시키고, 전국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오데르·나이세강」 以東地域의 국토를 폴란드에 병합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전국토와 베를린을 4分割시켜 「4大國 占領地域」으로 分割占領하게 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한국의 분단에 비하여 더욱 비참했고 잔인했던 것이다. 이는 敗戰國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措置였으며, 게르만민족의 勢力弱化를 위한 계획적인措置였다.

(3) 周邊情勢

○ 한반도의 周邊情勢는 미국·일본·중국·소련등, 4強體制의 角逐場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어서 一目瞭然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東西陣營의 勢力均衡이 流動的이며 군사적 대결에 의한 局地戰의 위험이 尙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中·蘇間에는 國交關係가 수립되지 않았고, 그들 양국은 한국정부를 承認하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美·日 양국과는 國交關係가 없는 상태이다.

○ 독일은 서독이 NATO에 가입했고, 동독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東西陣營의 국제적 防衛體制의 對決로 맞서게 되었다. 東西陣營의 勢力均衡이 유지되는 한 독일은 局地戰의 위험은 없다.

서독은 1970년 소련과 「獨·蘇不可侵條約」, 폴란드와 「獨·波友好條約」을 체결하여 共産諸國과 國交關係를 정상화 했다.

그러나 주변 4강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새로운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있다.

(4) 對決狀況

○ 한반도는 북한이 不法南侵한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南北韓間에는 참여화된 武力對決의 상태로 계속 對峙해 있어서 긴장감이 尙存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친 南北會談이 進行되고 있으나, 相互交流와 協力の 길이 트이지 않고 있다.

○ 독일은 분단 이후 同族相殘의 全面戰爭이 없었다. 그리고 武裝共匪의 도발과 테러도 일체 없었다.

1972년 「東西獨 基本條約」의 체결 이후, 다방면적인 交流協력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相扶相助하면서 共同繁榮의 길을 摸索해 왔다.

라. 결 언

제2차 世界大戰이 끝난 다음,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된 「國際型 分斷國」이 한국과 독일이다. 그리고 국내적 문제로 부득이 분단된 「국내형 分斷國」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그러나 분단의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강대국이 뒤집어 씌운 理

念 때문에 서로 이데올로기의 대치상황으로 적대관계에 놓인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에서는 적화통일이, 한국에서는 분단상황(휴전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고, 독일에서는 베를린장벽은 열렸으나 아직도 통일은 이룩되지 못한채 남았으며 중국에서는 해협양안의 대결장으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독일과는 달리 제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戰犯國家가 아닌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로 분단되었다는 사실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단장벽의 붕괴현상을 보는 우리의 감회는 착잡하고 무한히 부러울 따름이다.

한편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자세로 동서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서, 그곳의 상황만 강건너 불보듯 지나치게 들뜬 마음으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교류협력과 개방의 시기를 앞당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구의 개혁바람은 이제 머지않아 아시아로 불어 올 것이다. 어느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동구의 개혁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勢를 타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공산당도 때가 더 늦기 전에 이 「歷史的 轉換」의 물결에

순응해 體制改革과 社會開放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분
단국의 통일실현에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分斷國 統一問題

1990年 1月 18日 印刷

1990年 1月 25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234-4102

(국통연 89-12-135)

